

의안번호	2209789
의 퇴 인	박상웅 의원
회 답 일	2025. 5. 1.
추 계 번호	25F229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감소지역 가업상속의 가업상속공제 한도액 인상－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안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	○ 인구감소지역 가업상속의 가업상속공제 한도액 인상 － 인구감소지역에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을 가업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일괄적으로 600억원 적용				
		구분	현행		개정안(인구감소 지역)	
		공 제 한 도	가업기간 10년 이상 ~ 20년 미만	300억원	가업기간 10년 이상 ~ 20년 미만	600억원
			가업기간 20년 이상 ~ 30년 미만	400억원	가업기간 20년 이상 ~ 30년 미만	
			가업기간 30년 이상	600억원	가업기간 30년 이상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서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을 가업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의 한도액을 600억원으로 일괄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상속세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수 있음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은 다음과 같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함

-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는 제외하고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포함한다)·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함

□ 그러나 인구감소지역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한도액 인상에 따른 세수 효과는 ‘인구감소지역’의 가업상속 기업에 대한 가업승계 시점과 가업용 자산의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

- 참고로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은 다음에 나타낸 표와 같이 89개 시군구
 - 지정주기: 5년 단위 지정(2021년 10월 최초 지정)

[표 1]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부산(3)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3)	남구, 서구, 군위군
인천(2)	강화군, 옹진군
경기(2)	가평군, 연천군
강원(12)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6)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9)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10)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16)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15)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11)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함천군,

자료: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s://www.mois.go.kr/>, 인구감소지역 지정) 자료

- 그리고 최근 3년간 가업상속공제의 결정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110건(3,475억원), 2023년 188건(8,378억원)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445건(1조 5,282억원)의 가업상속공제 발생

[표 2] 최근 3년간 가업상속공제 결정현황

(단위: 건, 억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건수	110	147	188	445
공제금액	3,475	3,430	8,378	15,282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2과	최천규	백경엽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최천규	02-6788-4838	choi1009@assembly.go.kr